

#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3. 12. 23., 경영기획부)

## 1. 평가 개요

### □ 관련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 (재)국악방송 「윤리·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32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국악방송은 연 1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국악방송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인권경영 전담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에게 제출한다.
- ⑦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 목 적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활동으로 발생가능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사전 예방 및 방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 존중 경영 실현
- 평가과정을 통해 기관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활동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기관의 인권 친화적 경영이라는 목적 달성 유도

### □ 평가 추진 개요

- (평가기간) 2023. 12. 4. ~ 12. 22.

○ (평가자) 12명(부서별 인권경영 담당자 9명, 외부 전문가 3명)

○ (평가내용)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평가

○ (평가대상)

- 「기관운영」 부문 : 기관운영 전반 8개 분야 25개 항목 101개 지표\*

NO	평가 분야	항목수/지표수	NO	평가 분야	항목수/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개/23개	5	산업안전 보장	4개/19개
2	고용상의 차별 금지	3개/14개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개/ 5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2개/ 8개	7	정보 인권 보호	1개/ 5개
4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금지	4개/14개	8	직원 인권 보장	4개/13개

\*전년(2022년) 대비 “2개 항목 6개 지표” 증가

- 「주요사업」 부문 : 관련 2개 분야 6개 항목 19개 지표

NO	평가 분야	항목수/지표수	NO	평가 분야	항목수/지표수
1	콘텐츠 제작·관리	4개/13개	2	방송심의	2개/ 6개

○ (점수 및 평가등급 체계)

**【 인권영향평가 개별지표 평가표 】**

구 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00%	50%	0%		
점 수	분야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답변에 따라 비율로 점수 계산			평가 제외	

※ 평가 불가능한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정보없음 : 지표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 우리기관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인권영향평가 항목별 평가표 】**

구 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평 점	100~90점	90점 미만~80점	80점 미만~70점	70점 미만~60점	60점 미만

○ (평가방법)

- (1 차) 부서별 인권경영 담당자 체크리스트 평가

- (2 차) 외부위원(전문가) 서면 평가

## □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리스트 지표 개선(12.4.~12.11)
  - 「기관운영」 부문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항목을 준용하여, 8개 분야 중 2개 분야(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금지) 6개 지표 추가
  - 「주요사업」 부문 : '22년과 동일한 2개 분야 평가
- (담당자 지정 및 자체평가)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자체평가 실시(12.11~12.14)
- (외부위원 평가) 외부위원(전문가) 서면평가\* 실시(12.15~12.20)
 

\*2023년 인권영향평가 일정으로 전문가 현장실사에서 서면평가로 대체
- (결과보고 및 환류)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의결 후 개선방안 마련 및 홈페이지 공개(~'24.1.31까지)

## 2. 평가 지표 구성

### □ 「기관운영」 부문 평가

- 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확정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8개 분야 25개 항목 101개 세부지표 확정
- 기관운영 평가지표

NO	분야	항목	지표 총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① 인권존중 정책 선언 ② 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 ③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④ 인권경영 성과 ⑤ 구제절차 마련	23개
2	고용상의 차별 금지	① 고용상 비차별 ② 고용상 남녀 비차별 ③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4개

NO	분야	항목	지표 총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②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8개
4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금지	① 강제노동 금지 ②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③ 연소자 고용 금지 ④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14개
5	산업안전 보장	① 작업장 안전 ②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③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④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9개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② 모니터링 실시	5개
7	정보 인권 보호	① 정보 인권 보호	5개
8	직원 인권 보장	① 폭력예방 ② 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③ 일·가정 양립 ④ 휴식권	13개
합계		25개	101개

## □ 「주요사업」 부문 평가

### ○ 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확정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대내외 환경 및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급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 분야 6개 항목 19개 세부지표 확정

### ○ 주요사업 평가지표

NO	분야	항목	지표 총계
1	콘텐츠 제작 관리	① 차별금지 ② 방송인권 보호 ③ 재산권 보호 ④ 사업고객 정보 보호	13개
2	방송심의	① 프로그램 모니터링 체계 ② 민원인 인권 존중	6개
합계		6개	19개

### 3. 평가 결과

#### □ 「기관운영」 부문 평가 결과

- 「기관운영」 부문 평가 결과 : **“종합 점수 97점(가등급)으로 매우 우수”**
- 해당 부문 평가 결과는 97점(가등급)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22년 96점(가), 21년 85점(나))

NO	분야	평점	등급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3	가
2	고용상의 차별 금지	100	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가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가
5	산업안전 보장	100	가
<b>6</b>	<b>책임있는 공급망 관리</b>	<b>80</b>	<b>나</b>
7	정보인권 보호	100	가
8	직원 인권 보장	100	가
평균점수		<b>97</b>	<b>가</b>

- 「기관운영」 부문 평가 결과 세부내용

####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5개 항목, 23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인권존중 정책선언	4개					100점	가
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	3개	1개				88점	나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4개					100점	가
인권경영 성과	5개					100점	가
구제절차 마련	4개	2개				83점	나
평균 점수	20개	3개	0개	0개	0개	93점	가

☞ 기관활동으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 과정을 포함하는 내용 필요

② 고용상의 차별 금지(3개 항목, 14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고용상 비차별	5개					100점	가
고용상 남녀 비차별	6개					100점	가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14개</b>	<b>0개</b>	<b>0개</b>	<b>0개</b>	<b>0개</b>	<b>100점</b>	<b>가</b>

- ☞ 여성 및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되고 있음
- ☞ 그러나 '남성이지만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고려하여 지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2개 항목, 8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4개					100점	가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4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8개</b>	<b>0개</b>	<b>0개</b>	<b>0개</b>	<b>0개</b>	<b>100점</b>	<b>가</b>

- ☞ 현재 기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되어서 운영 중이며, 원만하게 노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 노동조합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갈등이 없음

④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3개 항목, 12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강제노동 금지	6개					100점	가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1개					100점	가
연소자 고용 금지	5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12개</b>	<b>0개</b>	<b>0개</b>	<b>0개</b>	<b>0개</b>	<b>100점</b>	<b>가</b>

- ☞ 2023년에는 해당사항 없음

⑤ 산업안전 보장(4개 항목, 19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작업장 안전	6개					100점	가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5개					100점	가
필수장비제공 및 교육실시 등	5개					100점	가
산업재해 피해자근로자 지원	3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19개</b>	<b>0개</b>	<b>0개</b>	<b>0개</b>	<b>0개</b>	<b>100점</b>	<b>가</b>

- ☞ 매월 안전 보건관리가 전문가에 의해 잘 이뤄지고 있음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2개 항목, 5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3개					100점	가
모니터링 실시		2개				50점	마
<b>평균 점수</b>	<b>3개</b>	<b>2개</b>	<b>0개</b>	<b>0개</b>	<b>0개</b>	<b>80점</b>	<b>나</b>

- ☞ 실제 모니터링에 대한 방안 검토 필요

⑦ 정보 인권 보호(1개 항목, 5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정보 인권 보호	5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5개</b>	<b>0개</b>	<b>0개</b>	<b>0개</b>	<b>0개</b>	<b>90점</b>	<b>가</b>

- ☞ 그룹웨어 공지사항 및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보안업무지침 등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 이해관계자에게도 각종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⑧ **직원 인권 보장(4개 항목, 13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폭력예방	3개					100점	가
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4개					100점	가
일·가정 양립	2개					100점	가
휴식권	4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13개</b>	<b>0개</b>	<b>0개</b>	<b>0개</b>	<b>0개</b>	<b>100점</b>	<b>가</b>

- ☞ 관련 교육 및 설문조사를 통해 폭력예방,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한 교육, 모니터링 문제에 대한 기관차원의 노력이 필요

□ 「주요사업」 부문 평가 결과

- 「주요사업」 부문 평가 결과 : “종합 점수 86점(나등급)으로 우수”
- 해당 부문 평가결과는 86점(나등급)으로 나타났으나, ‘방송인권 보호’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22년 85점(나), 21년 85점(나))

NO	분야	평점	등급
1	콘텐츠 제작·관리	88	나
2	방송심의	83	나
<b>평균점수</b>		<b>86</b>	<b>나</b>

- 「주요사업」 부문 평가 결과 세부내용

① **콘텐츠 제작 관리(4개 분야, 13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차별금지	4개	1개				90점	가
방송인권 보호	1개	1개				75점	가
재산권 보호	3개	1개				88점	나
사업고객 정보 보호	2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10개</b>	<b>3개</b>	<b>0개</b>	<b>0개</b>	<b>0개</b>	<b>86점</b>	<b>나</b>

- ☞ 외부인력 차별금지에 대한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 관련 내용 개정
- ☞ 콘텐츠 제작 수행 인력 대상으로 저작권, 재산권 등 관련 교육 부재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필요

② 방송심의(2개 항목, 6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프로그램 모니터링 체계	2개	1개				83점	나
민원인 인권 존중	2개	1개				83점	나
<b>평균 점수</b>	<b>4개</b>	<b>2개</b>	<b>0개</b>	<b>0개</b>	<b>0개</b>	<b>83점</b>	<b>나</b>

☞ 민원인 전화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고객요구에 대한 피드백이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갖춰 운영되고 있음

#### 4. 외부위원(전문가) 평가 의견

**위원별 전문분야 선정\***

NO	평가 분야	항목수	지표수	평가위원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개	23개	강○○
2	고용상의 비차별	3개	14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2개	8개	
4	기관운영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금지	4개	최○○
5		산업안전 보장	4개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개	5개	남○○
7	정보 인권 보호	1개	5개	
8	직원 인권 보장	4개	13개	
1	주요사업	콘텐츠 제작·관리	4개	13개
2		방송심의	2개	
<b>합 계</b>		<b>31개</b>	<b>120개</b>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윤리인권경영위원 중 외부위원이 평가

## □ 위원별 평가 의견

### ○ 「기관운영」 부문 평가

지표	평가결과(보완사항)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중 지표 8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 협의 과정이 존재한다'와 관련하여, 증빙자료(2023년 윤리인권경영 추진 계획(안))의 내용으로는 <b>구체적 협의과정(대상자 선정 및 협의 절차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움.</b>
2. 고용상의 차별 금지	'고용상 남녀 비차별'이라는 항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임. 기관 내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성별 상 남성이지만 약자'인 근로자에 대해 차별이 될 수 있음. 2024년 평가 시에는 지표 자체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필요해 보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조는 2020년 결성-22년9월 단체협약 체결(3년)-23.9월 3분기 노사협의회개최 등 원만하게 노조와 협력관계를 해 나가는 것으로 보임. 노조 일상활동, 편성 제작의 자율성 보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부당노동행위 갈등이 없어 보임.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음.
4.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근로계약서 작성, 신분증 강제요구, 시간외근로 강제 등 노동인권침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강제 시간외근로 수행여부 체크는 연간 근태체크를 부서별, 직종별로 파악하여 <b>업무량 자체가 시간외근로를 해야만 하는 근무조건인지를 체크했다면 좋겠음.</b> 2022.12 연소자고용시 연봉계약서작성기준 (법정근로시간 1일7시간+연장1시간) 과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항목은 2023년에 실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b>계약이행협약서 상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협력사가 노동법위반 문제 발생 시 계약 취소에 준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함.</b>
5. 산업안전 보장	필수적인 일상활동으로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크하는 것은 바람직함. 코로나시기 안전관리 자료들은 평가에 유용하지 않음 코로나이후 새로이 유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체크해 보았으면 함. 안전예방교구의 하나로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이 구체적인 지표로 설정되었으면 함. <b>산재발생 사례를 분석하여 산업안전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면 함.</b> 산재를 입은 피디입원비 지원은 좋은 복지 사례임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실행을 체크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리 시스템임. 용역표준계약서 상 거래업체의 노동권침해 금지 및 침해행위 시 계약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b>표준계약서 불임3. 공정계약서 내용이 노동권보장 관련인지 확인 필요함.</b> 모니터링은 실제 현장에서 계약서대로 이행된 실적을 평가해야 함.

지표	평가결과(보완사항)
<p>7. 정보 인권 보호</p>	<p>내부 이해관계자에게 그룹웨어 공지사항, 게시판 및 교육 등을 통해 매월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제기하고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통신비밀 보호 관련 정보를 임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충분하게 제공하는 한편 이사회 회의록,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등 각종 내부 경영정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인권보호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지침, 정보보안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도 완비하여 투명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정보공개 게시판을 통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 성과 정보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등 내부 경영과정에 관한 정보 및 사업실명제 공개를 통한 각종 프로그램 기본 정보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며 시청자 의견 및 민원을 수렴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향유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됨.</p>
<p>8. 직원 인권 보장</p>	<p>임직원 인권교육은 모두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b>온라인 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을 위주로 실시하는게 효과적이며 바람직함.</b>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이 있지만 <b>규정이 형식적으로 보이고 실천이 의문시됨</b>                  즉, 지침 내에 담당부서 지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업무 담당부서로 추정되는 경영기획부 업무분장표에도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b>이용자(임원 및 간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이 결여되어 있음.</b>                  협력회사 임직원 및 특수형태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인권교육, 신고채널 개설,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 필요</p>

○ 「사업운영」 부문 평가

지표	평가결과(보완사항)
<p>1. 콘텐츠 제작 관리</p>	<p>방송작가 집필 계약서 제16조(프로그램의 2차 이용)가 개정되어 제2항이 추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b>별도 계약이 없거나 작가의 권리를 위탁받은 단체가 없는 경우 방송사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임.</b>                  그런데 2차 이용에 관해 방송작가 등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관행인 점을 고려할 때 위 <b>신설 규정은 방송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 좀 더 치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b>                  국악방송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보유가 필요하다면 방송작가에게 대본 작성에 해당작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보완 규정을 두어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일정 부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콘텐츠 제작 수행인력 대상으로 저작권, 재산권 등 관련 교육이 부재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필요.                  제작 또는 콘텐츠 관리 시 사업수행 인력의 저작권, 소유권 등을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는 절차 필요.</p>

지표	평가결과(보완사항)
2. 방송심의	<p>전반적으로 체계적인 방송심의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p> <p>시청자위원회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며 잠재적 고객층인 30~40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연령대 위원을 신규 선임하는 등 전향적으로 운영중임. 다만 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경영에 반영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좀 더 요구됨</p> <p>민원인 전화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고객의 요구에 대한 피드백 여부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p>

## 5. 행정사항

###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인권영향평가 전체 평가 공유 및 결과보고 심의·의결
  - 개선방안 도출 등 후속 조치 진행
  - 2024년 윤리인권경영 추진계획에 해당 내용 반영

###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공개

- 기관 홈페이지,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 등에 인권영향평가 결과공개

- 붙임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표 1부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표 1부. 끝.